

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관리·운영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2860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5년 5월 26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「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9조」에 따라 운영 중인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와 관련하여
- 양질의 장기요양요원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 및 단체의 전문성 등을 활용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며,
- ‘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’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시설 개요

- 시설명 : 서울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
 - 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(광역 및 서북, 서남, 동북, 동남) 통합 운영
- 소재지 및 시설규모

현 시설명	소재지	면적
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	은평구 통일로 680, 2층·4층·6층(녹번동, 대일빌딩)	562.90㎡
서남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	영등포구 경인로 725, 2층(문래동, 조양빌딩)	324.80㎡
동북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	강북구 도봉로 172, 5층(미아동, 남송빌딩)	311.22㎡
동남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	송파구 문정로13, 4층(문정동, 선바위빌딩)	298.86㎡

나. 주요 위탁내용

- 위탁기간 : 3년('25. 10. ~ '28. 9.)
- 운영사업(센터의 기능)
 -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 및 권익의 향상에 관한 사항
 - 장기요양요원의 육체적·정신적 스트레스를 예방·해소하기 위한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
 - 직무향상교육 등을 통한 장기요양요원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
 -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리향상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
- '26년 예산(안) : 3,950백만원
- 수탁기관 선정방법 : 공개모집(신규위탁)

다. 민간위탁 추진 근거

-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9조(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) 및 제11조(운영의 위탁)

라.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- 센터 운영 목적은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, 인식개선, 권익옹호 등을 통한 돌봄서비스 질 향상 기여로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지식과 다년간의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
- 따라서, 양질의 장기요양요원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축적한 민간전문기관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9조
(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) 제1항

⇒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

-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11조
(운영의 위탁)

⇒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치구, 비영리
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2025년 제3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완료(적정)

※ 작성자 : 복지실 돌봄복지과 김정미 (☎ 2133-7424)